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2. 1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7호로 2018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조례」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조항 신설

○ 안 제6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규정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1. ~ 11. 7.):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6조의2를 신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개정된 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우리구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